# 이안 시그니처 역곡 무순위(임의공급 4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계약의사 없는 "묻지마 청약"고객 청약 자제
- ※ 최근 "<mark>묻지마 청약"</mark>을 하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 정작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mark>자금사정</mark> 등으로 계약이 어려운 경우, 청약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전 반드시 홍보관 대표번호(1533-3835)로 문의 후 청약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민영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2024.04.25.해제)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임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3.04.06.(목)	2024.06.05.(수)	2024.06.10.(월)~06.11.(화)	2024.06.14.(금)	2024.06.15.(토)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임의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순위(임의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П

- 본 주택의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05.(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071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06.(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007이므로, 본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 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 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임의공급)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4.06.10.(월)~06.11.(화)	2024.06.14.(금)	2024.06.15.(토)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홍보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68-8, 3층)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 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한기간
전매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의 당첨자발표일[2023.04.25.(화)]로부터 1년 - 現 전매제한 해제

##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17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6층 2개동 총 99세대, 일반분양 58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2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구액한다한오		(전용면적기준)	ㅋㅋ표기	전에세대구	동	호
2024910071	01	065.9800	65	1	101	305
	02	070.4900	70	1	101	302
		합 계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별	충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약금 0%)	잔금 (90%)	
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14일이내	입주지정일
065.9800	65	101동	3층	1	189,938,416	326,198,584	516,137,000	10,000,000	41,613,700	464,523,300
070.4900	70	101동	3층	1	204,752,256	351,639,744	556,392,000	10,000,000	45,639,200	500,752,800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 잔금	우리은행	1005-403-830300	주택도시보증공사인천관리센터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1001홍길동"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V

IV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14.(금) ~ 2024.06.23(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6.1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2024.06.15.(토) 10:00~17:00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168-8, 3층 이안 시그니처 역곡 홍보관]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고트니크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원(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해외체류 증빙서류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기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해외근무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단신부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2212)	세대원 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원(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 하며, 세대원이 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심부임 인정 불가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제3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대리 계약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나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무순위(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iaansignature.com)]

